

오산시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지침

제정 2010년 11월 24일 예규 제47호
일부개정 2014년 10월 1일 예규 제62호
일부개정 2019년 1월 3일 예규 제76호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오산시 소속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대외직명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4. 10. 1>

제2조(적용대상) 대외직명은 오산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소속 6급(상당) 이하 일반직 및 별정직공무원에게 적용한다.

[전문개정 2014. 10. 1]

제3조(대상업무) 모든 업무분야를 대상으로 한다. 다만, 해당 업무분야의 특성상 대외직명을 부여하기가 적절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무분야는 제외할 수 있다.

제4조(대외직명)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4. 10. 1>

1. 6급 담당: 팀장
2. 삭제 <2019. 1. 3>
3. 7급 이하 공무원(6급 무보직 포함): 주무관

제5조(대외직명 사용) 대외직명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한다. 다만,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공식 직급을 사용하여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4. 10. 1>

1. 공문서 기안문·시행문, 시 홈페이지, 민원부서의 직원안내 등 대외적으로 호칭이 필요한 때
2. 표창장, 상장, 공로패, 기념패, 명패, 명함 등을 제작하는 때

부칙

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오산시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지침

부칙 〈2014. 10. 1 예규 제62호〉

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〈2019. 1. 3 예규 제76호〉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